

● 제321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2차 운영위원회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발의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

2023. 12. 21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【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**

### **I. 조례안 개요**

#### **1. 제안자 및 제안경과**

##### **【김경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1361)】**

가. 제안자 : 김경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

나. 제안일 : 2023. 10. 16.

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
라. 의안번호 : 1361

##### **【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1382)】**

가. 제안자 : 이병도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

나. 제안일 : 2023. 10. 16.

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
라. 의안번호 : 1382

#### **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##### **【김경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1361)】**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에 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함(안 제3조제3항).

## 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- (3)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10.26. ~ 2023.10.30.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### 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동의

## 【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1382)】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활동 뿐 아니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준비기간도 포함되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의 의정활동시에도 전문성 확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범위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).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- (3)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3.10.26. ~ 2023.10.30.
    - 나) 예고결과 : 없음
  - 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동의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지난 '23.9.14.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-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이 ‘김경 의원안(의안번호 1361)’, ‘이병도 의원안(의안번호 1382)’으로 각각 발의됨.

### 2 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 (김경·이병도 의원안 제3조제3항)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(이하 “기본 조례”) 제3조제3항 중 “의원들”에 ‘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’을 포함하려는 것임.

#### <김경 의원안, 이병도 의원안>

현 행	김경 의원안	이병도 의원안
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 원칙) ①·② (생략)	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 원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 원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 의원 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</u> )들이-----.	③ ----- 의원 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<u>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</u> )들이-----.

- 이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노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는 지방의회의원과 더불어 의원당선인 또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, 이는 지난 9월 다음과 같이 개정된 사항임.

**<지방자치법 제46조>**

개정 전	개정 후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(생략)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_____ _____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취지와 기본 조례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.
- 개정 근거인 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”<sup>1)</sup>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 등에 관한 법적근거<sup>2)</sup>가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법적근거가 불비한 점을 지적하고, 의원

1)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(원안 2119465), ' 23.8.23. 본회의 통과(대안 2123980)

2) 「지방자치법」

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당선인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 (이하 생략)

당선인의 교육연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힘.

- 기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<sup>3)</sup>하고, 이를 위한 의회의 의정활동원칙<sup>4)</sup>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.
- 또한, 개정안이 적용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당선인의 범위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”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법체계상 타당함.
- 소관 부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, 개정안이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의원당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연수의 운영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.
- 다만,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문내용이 동일함에도 적용대상을 각각 “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”(김경 의원안), “지방의회의원 당선인”(이병도 의원안)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통일하고, 개정안을 통합·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.

3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,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서오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
**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**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회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취지가 타당하고,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위법과 모순·충돌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각 개정안은 의원당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개정사항이 동일하므로 그 표현을 통일하고, 개정안을 통합·조정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91